

한미글로벌 ESG 위원회 운영규정

한미글로벌주식회사

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미글로벌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 및 기능)

- ① ESG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,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Corporate Governance) 부문(이하 포괄하여 "ESG")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.
- ② ESG위원회는 회사의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을 발굴,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·검토한다.

제4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가 위원회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 또는 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신,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회사의 ESG 전략 관련 기본 방향
- ② 중장기 사업목표와 연계된 ESG 목표 및 비전
- ③ 전년도 ESG 추진과제 이행사항 결과 및 당해년도 추진계획
- ④ 환경·사회 관련 주요 비재무 이슈 사항 및 대응책
- ⑤ 회사의 ESG 관련 대외 Communication 관련 사항
- ⑥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
제9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

또는 서명한다.

제11조(보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13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